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시행을 앞두고

백세미, 종계에 준하는 방역관리 노력 필요

- 주령에 따른 현실 보상이 따라야 -

종 계장·부화장의 효율적 방역관리와 추백리·가금티푸스의 사전예방을 통해 양계농가에 건강한 병아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2항·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이 지난 12월 6일 고시되어 오는 5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 주요 내용

동 방역관리 요령은 궁극적으로 양계질병의 발생을 방지하여 양계산업 발전을 꾀하자는 목적을 두고 있다. 동 요령의 주요내용은 오는 5월 1일부터 종계(원종계 포함)에서 추백리·가금티푸스 양성반응이 2% 이상 나타날 경우 종란을 부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종계 도태시 도태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다루고 있다.

세부사항을 보면 우선 종계에는 추백리·가금티푸스에 대한 예방접종을 해서는 안되고 부화후 120일 령 산란개시전 추백리·가금티푸스 검사를 실시하되 실시 1개월 전부터는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항

균약제 등을 사용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를 실시한 종계에 대해서는 1년내에 추가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계장에서는 종계 및 종란의 거래기록을 작성하고 2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며, 가축방역관이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항상 제시를 해야 한다.

검사기관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원종계(GPS)를, 시도 가축방역기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접약하고 있다

| 특집 · 종계장 · 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시행을 앞두고 |

관에서 종계(PS)를 검사토록 하고 있는데, 계사단 위로 30수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실시하되 양성율이 10%이상인 계군은 양성계로 판정하고 양성율이 10%미만인 계군은 1주일내에 사육중인 닭을 종계로 사용못하도록 조치한 후 재검사(300수)를 통해 양성계를 최종 판정한다. 재검사에서 양성율이 2% 이상은 양성계군으로 하고 2% 미만인 계군은 의양성계군으로 판정, 종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토록 하였다.

이때 양성계군으로 판정된 계군은 가능하면 1개월 이내에 도계목적으로 도태가 될 수 있도록 살처분 조치를 받게되며, 도태장려금은 종계 1수당 5,000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기존의 종계장위생관리요령과 추백리방역실시요령은 동 요령실시와 함께 각각 폐지된다.

현안문제 분석

이 관리요령은 당초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관련 업계의 혼선이 이어지면서 2개월이 연기된 바 있으며, 앞으로 시행이 되더라도 해결해야

할 당면 문제들이 남아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종계·부화인들은 정부가 삼계(일명 백세미) 생산용 모계로 사용되는 산란실용계에 대하여 종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여 각종 질병확산을 최소화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백세미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며, 도태 장려금으로 정해놓은 수당 5,000원에 대해서도 현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종계·부화인들은 동 요령이 시행될 경우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상당수의 종계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백세미, 토종닭(일부) 등도 같은 범주에 넣어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백세미 생산에 참여하는 업체(계열업체 등)에서는 백세미용 모계로 사용하는 산란계의 경우 가금티푸스 백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상당수 종계장에서 가금티푸스 백신을 하고 있는 만큼 4조에 규정된 가금티푸스 예방접종 금지 조항을 삭제하거나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에서는 종계부화장의 방역관리를 통해 우량



종계인들은 백세미를 제도권에 넣어 종계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토록 요구하는 한편 백세미 생산 계열업체에서는 종계도 가금티푸스 백신접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 종계장 · 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시행을 앞두고 · 특집 |

병아리를 공급해 양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동시 행령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백세미 종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자는데 합의

백세미에 대한 문제는 이미 지난 1997년 백세미 생산이 육계산업에 영향을 가져오면서부터 화두가 되었고, 결국 2000년에는 국내의 삼계산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산업화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백세미가 질병전파에 취약점을 노출시키면서 종계와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이 도출된 바 있으나 축산업 등록제 사업과 맞물리면서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다.

최근 종계·부화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에 지속적인 요구를 해왔으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5월 1일부터 시행키로된 동 관리 요령에 대해 지켜나가기 힘들 수도 있음을 강력히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간파한 정부에서는 양단체(양계협회, 계육협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제시할 경우 최대한 반영시킬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양단체는 지난달 11일과 18일 두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최대한의 의견을 도출하였다.

지난 11일 1차 회의에서는 백세미 생산용 산란 실용계에 대해 종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자 는 의견에 합일점을 찾았다.

종계·부화인들은 육계산업 및 질병예방에 걸림돌이 되는 백세미 생산을 원천적으로 중단시키자는 기존의 방침에서 한걸음 물러나 백세미는 복 특수기에 삼계탕용 닭으로 애용되며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은 만큼 방역관리에 초점이 맞춰

져 사육이 이루어질 경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계열업체 관계자들도 백세미 생산용 산란실용계에 대해 가금티푸스 백신을 접종하는 문제 등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질병예방차원에서 종계에 준하는 관리를 하자는는데 의견을 같아했다.

18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더욱 명확히 하고 관리요령 문구중 2조에 백세미를 관리요령에 포함시키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차후 백신 사용 등 제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향후 추진방안

질병방역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관리요령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앞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백세미와 가금티푸스 백신사용에 대한 문제해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살처분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적절한 보상이 따라주어야 한다. 그러나 종계 수당 5,000원은 현실에 비해 낮은 가격이며, 주령별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제는 백세미 뿐 아니라 토종닭까지도 거시적인 차원에서 제도권에 들어와 질병방역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에서도 백세미 방역관리요령 제정을 서두르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동 요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도 협의회를 통해 심도있게 다루어질 것으로 본다.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역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정리 | 김동진 팀장) **[양계]**